

이미지 다섯째

조상땅 찾기가 한결 쉬어졌다

2002. 2. 1 부터는 지적정보센터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 군. 구.청에서도 조상땅을 찾을 수 있다.

시. 도청 소재지가 아닌 읍. 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이 조상땅을 찾기위해서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나 시. 도청을 방문하여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2002.2.1. 부터는 행정자치부나 시.도청을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의 시.군.구청에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

조상땅 찾아주기란

국민이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존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본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적정보센터란

1995년도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적전산자료와 주민등록전산자료 및 개별공시지가전산자료를 통합 구축한 것으로써, 그 동안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자료로 3,395천명에 3,111천필, 개별법령에 의한 자료로 3,340천명에 14,773천필, 정책정보자료로 116건에 160,673천필을 제공하여 정부내에서도 전산정보의 공동활용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한편 조상땅 찾아주기는 1995년 9월부터 시행하여온 제도로써 그 동안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하여 17,514명에게 49천필의 조상땅을 찾아준바 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재산의 경우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만 있으면되나, 사망자의 조상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 외에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제적등본을 추가로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가까운 시. 군.구청 지적(地籍) 부서를 방문하여 자료연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그 자리서 전국에 분산되어있는 토지 소유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주의할 점으로는 조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는 전국단위의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토지를 찾고자하는 시.도청을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만 토지를 찾을수 있다. 다만 동일 시.도 관내인 경우는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 신청하여도 팩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공받을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는 성명으로 조회를 하여 자료를 제공 하므로 한글 특성상 동명이인이 많아 타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어 불가피하게 제한을 두어 운영할 수밖에 없어 사전에 어떤 시.군.구에 있는 토지를 찾아야 할 것인지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여야 할 것이다.

본인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지적정보센터의 조상땅 찾아주기는 개인의 재산현황을 알려주는 만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사생활 및 비밀을 침해하는 우려는 없다고 한다.그러므로 부부,부자 또는 형제라 할지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재산현황을 알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간의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회도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그 뿐만 아니라 ,이미 본인 또는 조상 소유였다가 타인 명의로 변경된 경우도 정보대상이 아니므로 조상땅 찾아주기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조상땅 찾아주기 제도를 이용하면 본인의 재산관리를 쉽게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군.구청으로부터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관리함으로써 토지대장이 많게는 수 십장이되어 재산관리에 불편함이 많았으나 조상땅 찾아주기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2장에 모두 출력 제공됨으로써 재산관리를 한층 쉽게 할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알고있는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모르고 있었던 재산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조상땅 찾아주기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지적정보센터 홈페이지 (lic.mogaha.go.kr)를 이용하는 경우는 조상땅 찾아주기 신청방법, 신청서식, 각 시,도청의 지적부서 전화번호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화는 02-3703-5081,5060 또는 시,군,구청 지적부서로 전화를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다.

조상땅찾아주기 사례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산225번지 임야17157㎡(5190평)

2021년 2월 5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등기관

소유권보존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과정

일자불상경 전라북도 도청에 천막치고 업무보는데 찾아 가서 제적증명서를 제시하며 부동산을 찾아주기를 신청하니 담당공무원님이 조그미한 쪽지에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산225번지 임야17157제곱미터(5190평) 미등기/북면 남산리

(주)대경지리정보 TEL(063)243-0329 FAX(063)242-8044 인쇄된 메모지에

소스를 적어주시기에 이를 갖고 토지대장을 때어보니까 소유자란에 저의 부친 박종래(朴鍾來) 주소는 북면 남산리 로만 앞에도 뒤에도 없는 에메한 기록으로 되어있어서 소유권 보존등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내면사무소에 가서 재산세를 내겠다고 하니까 고지서를 발행해주어서 계속 재산세를 냈습니다.

그러던중 정부에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공포하여서 때는 왔구나 하고 여기에 응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명 : 부동산 특별조치법)

사 유 서

1.부동산의 표시 :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산225번지 임야 17157㎡(5190평)

2.위 부동산의 토지대장에 소유자 박종래(朴鍾來)는 신청인의 부친이었습니다.

3.그런데 박종래(朴鍾來) 는 1950년 7월 23 일 6 25사변시 사망하였으며 그당시 신청인은 망 박종래(朴鍾來)의 아들로서 호남중학교1학년 당시나이 13 세였습니다.

4.그당시 망 박종래(朴鍾來) 신청인의 아버지는 정주읍 읍사무소 임시직원으로 근무하며 저의 가족을 부양하며 살았습니다.

5.피상속인 망 박종래(朴鍾來) 그 아들인 (상속인) 신청인 박갑수(朴鉉洙)는 박종은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려고 하니까 소유자 주소기록이 주소란에 에메하게 "북면 남산리"로만 기록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등기를 못한다고 거절을 당하고 별수없이 1996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이부동산 임야를 점유하며 재산세를 내면서 20년이상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고 현재에 이르러 등기특별조치법을 마지하게 되었습니다.

6.상속관계 : 피상속인 인적사항

피상속인 : 호주 박종래(朴鍾來)1950년 7월23일 사망

본적 : 전라북도 정읍시 장명동 177번지

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장명동 177번지

타개년월일 : 1950년7월23일

타개장소 : 전라북도 정읍시 장명동 177번지에서 사망

신고자 : 동거자 신영애(辛瑛愛)신고

상속인 : 호주 박갑수(朴鉉洙)(신청인)

*1961년 이전 당시의 상속법은 호주단독 상속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7.이를 살펴보면 이토지 임야 대장은 1920년 조선총독부령112호로 (임야대장규칙)에 따라 토지조사에 이은 임야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8.그리고 신청인이 오래동안 북면사무소 산내면사무소 정읍시청등토지대장의 주소란 확인을 다녔는데 6 25사변시 면사무소 정읍읍사무소등 공비들이 불질러서 소각시켜서 자료가 없고 당시에는 주민등록법이 없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확인등 입증은 불가능 하였습니다.그래서 할 수있는일은 이부동산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산 225번지 임야 17157 제곱미터를 점유하며 산내면 사무소에서 발행해주시는 재산세 고지서로 재산세를 열심히 한번도 빠지지않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영수증만 열심히 모아서 보관하고 있으며 안산시 상록구청에 가서 1996년부터 2020년 현재 까지 재산세 영수증을 발행받아서 입증 증거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출하였습니다.

9.옛날 저의 할아버지 박언규(朴彦奎)님은 초대 정읍군수 서리도 하였고 옛날에는 선산에 묘를 쓰기위해서 여러곳에 묘를 쓰기 위한 선산들이 여러군데 있었던 기억도 있으며 신청인은 어릴 때 할아버지 박언규(朴彦奎)님은 저를 데리고 명절때는 여러군대를 데리고 다니며 성묘 등 유별나게 엄하게 교육을 시키셨습니다.그런데 6 25사변후 가세가 기울어져 그산들이 헐값에 없어지고 우리들을 거지꼴이되어서 그 할아버지 께서 물려준 재산들이 없어졌습니다.

10.이번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대장 오류를 정리하여 정당한 상속인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하여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20여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선처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1. 임야대장(임야도등본도포함) 1부
- 1. 임야 구대장(임야도 등본도 포함) 1부
- 1.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재산세) 1부
- 1. 미등기 사실증명서 1부
- 1. 제적등본 호주 박종래 1부
- 1. 제적등본 호주 박갑수 1부
- 1.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박갑수 1부
- 1. 주민등록등본 (박갑수) 1부
- 1. 주민등록초본 (박갑수) 1부
- 1. 인감증명서(박갑수) 1부

2020.년10 월

신 청 인 박 갑 수 인

수 신 : 정 읍 시 장 님 귀하